

「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1. 4. 19. 개정 판 (시행 2021. 5. 1.) → 2021. 12. 27. 개정 판 (시행 2021. 10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56/compare?from=1172&to=1237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1:10:01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물품반납 폐기)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/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/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리팀 관재에 제출하고,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.〈개정 2020-12-21〉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/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/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	제6조(물품반납 폐기)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/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/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리팀 관재에 제출하고,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.〈개정 2020-12-21〉 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/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/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 ③ <u>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집기비품이 노후/파손으로 폐기처리 하고자 하면 [별첨1]폐기물(개인)처리 요청에 따른 급여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폐기물 처리비용은 [별첨2]폐기물처리비용표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한다.〈신설 2021-12-27〉</u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물품반납 폐기) ① 집기 및 사무기기 반납/폐기 신청시에는 사유 및 소견서를 물품 반납/폐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시설관리팀 관재에 제출하고, 물품은 학과 및 부서에서 직접 시설관리팀 관재에 반납하도록 한다.
② 학과에서 사용 중인 실험실 장비를 반납/폐기 시키고자 할 경우 기안서를 작성하여 학과에서 행정협의회 결의를 받아 반납/폐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.
③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구입한 집기비품이 노후/파손으로 폐기처리 하고자 하면 [별첨1]폐기물(개인)처리 요청에 따른 급여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폐기물 처리비용은 [별첨2]폐기물처리비용표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 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